

제 정 : 2012. 9. 7
개 정 : 2016. 3. 18
개 정 : 2024. 3. 21

內部去來委員會 運營規程

三星重工業株式會社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일층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정관 제30조의2에 의거 설치하기로 하고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성

제 2 조 (구성)

- ①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제 3 조 (위원장)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해임)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가능하며, 이사회는 해임,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제2조 제2항의 구성에 미달할 경우) 지체없이 충원을 해야 한다. 다만, 신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

제 5 조 (위원회)

위원회는 每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소집절차)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기타 발송 및 착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4 장 권한 및 책임

제 8 조 (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①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

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
단,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거래항목 중 50억원 이상거래는 사전심의하고, 50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위원회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 및 의결한다.

② 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

위원회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③ 내부거래 시정 조치 건의권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9 조 (의무)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① 선관주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내부거래위원회 간사로부터 분기1회 이상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하며,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의사록 작성의무

위원회는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점검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점검을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 10 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결의일로 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전반을 처리한다.

제 12 조 (경비)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13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14 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은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016.3. 18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